

정

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의의와 향후 추진방향

강성주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정책과 사무관

1. 배경

생산은 물론 시장 등 모든 분야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람·자본·정보가 자유로이 이동하는 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세계경제는 실질적 의미로 국경이 없는, 단일 경제권이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이는 WTO 출범이 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정보화의 진전으로 경제구조도 정보지향, 정보 의존화되는 지식·정보기반 경제로 급변하고 있으며, 컴퓨터·통신·방송의 결합현상이 일반화되면서 인류의 생활방식과 소비형태 및 생산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큰 변혁기를 맞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사회의 정보화가 절실히 필요하며, 정보화를 뒷받침 할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정보화는 공공행정, 국방, 사회복지 등 국가전반의 효율향

상은 물론, 산업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열쇠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산업발전을 선도해 나갈 신사회간접자본으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정보화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에따라 다가올 고도정보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사회 각 분야의 정보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부처간 산재된 정부의 관련기능을 체계화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산재된 정부기능으로 인하여 범정부차원의 입법은 번번히 좌절되었다. '94. 12 정부조직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발족하여 동입법은 새로이 중요성이 부각되었으며 정부일자에서 추진되어온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입법이 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되어 지난 7월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8월 4일에 공포되

게 되었다.

2. 제정경과

정보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시도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으며 '80년도에 들어서면서 각 부처에서 정보화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부처협의 과정에서 무산되었다.

'85년 체신부에서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률”을 제안하여 그 이듬해에 “전산망보급현황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칭되어 제정되었다. 또한 '90년에는 “정보통신진흥법”이 체신부에서 제안되어 '91년에 “정보통신연구개발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는 정보화관련 법제정이 더욱 활발해져서 '91년 무역EDI 활성화를 위한 “무역업무자동화에 관한법률”이 상공자원부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공업발전법”, “산업기술정보원법” 등에 정보화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92년에 대통령이 국가차원의 정보화 및 정보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여, 경제기획에 「정보산업발전기획단」을 두고 정보산업발전전략 계획(NSII)을 수립하였는데, 여기에서 체신부, 상공부, 과기처에 분산된 정보통신관련기능의 전담조직신설이 힘든 상황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다.

그 이후 입법작업이 현실적 여러 이유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신정부출범 후 '93년 6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상기 NSII를 다시 반영, 입법을 추진하여 같은해 9월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을 경제기획원에서 입법예고하고 '93년 12월 ‘정보산업기반조성에 관한법률’로 개칭되어 경제장관회의 의결 후 국무회의 안건으로 배포되었다가 법안 내용이 미진하여 철회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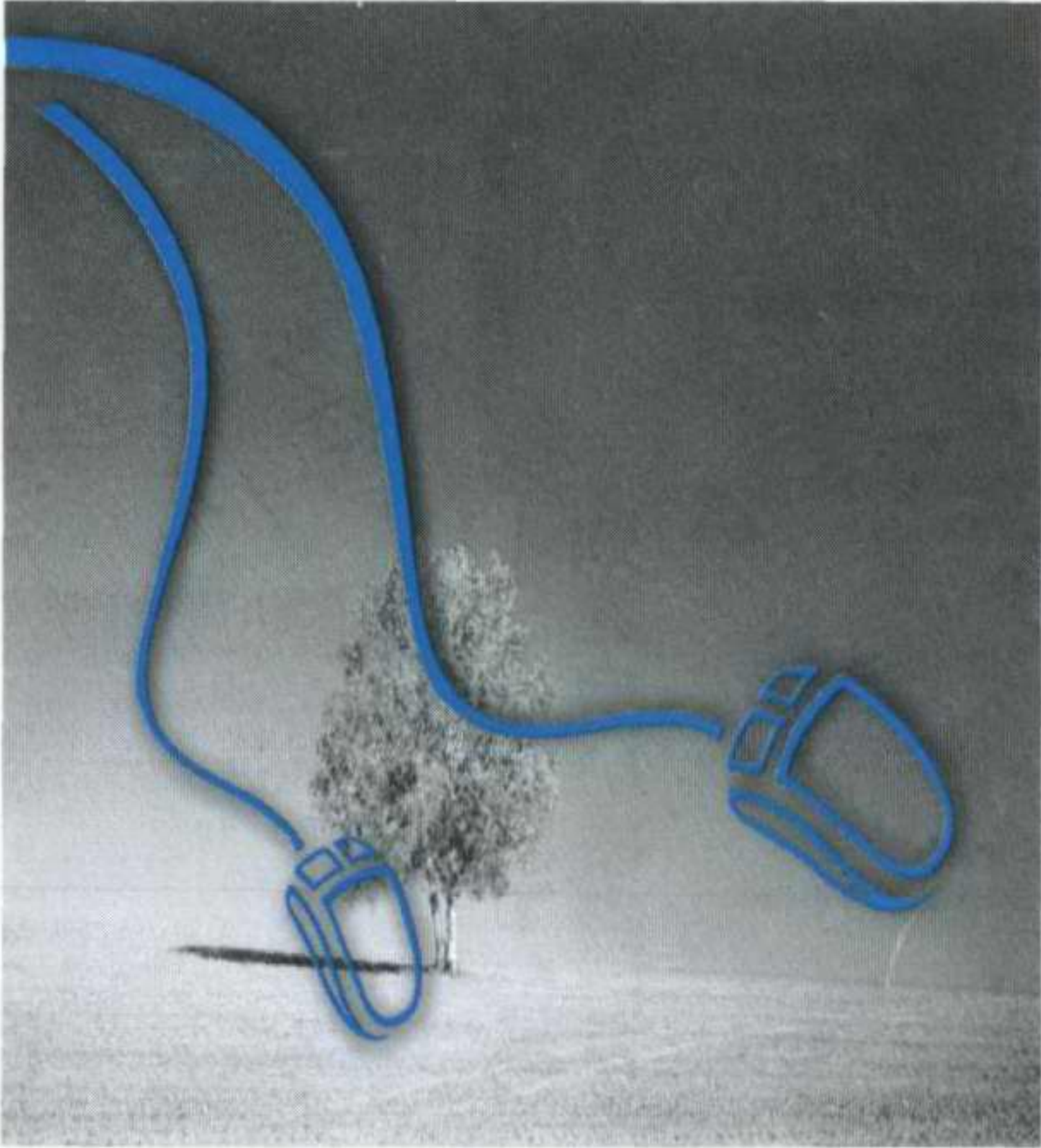
그 후 법안내용을 보강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수립,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및 정보화

촉진기금 등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94. 11월 동 법안이 경제장관회의를 통과하여 법제처 심의 중,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무회의 상정이 보류되었으며, 정보통신부 발족에 따라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이법의 제정을 다시 추진하여 금번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96. 1. 1일부터 이 법을 비로소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3. 주요내용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업무분야에서 정보화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여 정보화시책의 수립·시행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였다.
- ② 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주요정책의 수립, 예산의 편성·집행에 있어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 ③ 정보화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정보화촉진 및 정보통신 산업진흥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서 총리를 위원장으로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 및 각 부처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 ④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센터 설립 등을 규정하였다.
- ⑤ 정보화추진으로 유발되는 수요를 산업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개발, 표준화, 인력양성, 단지조성, 유통구조개선, 국제협력 등 정보통신산업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 ⑥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이 요청되어 법안에 별도의 장을 설정하여 추진체계, 민간참여, 재원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 ⑦ 정보화촉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 및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하고,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진흥기금을 동 기금의 연구개발계정으로 흡수하도록 규정하였다.

4. 법제정 의의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은 10년전 체신부에서 정보화사회기반조성 법안을 발의한 이래 줄곧 그 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다가 입법절차와 내용에 대해 관계부처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채 오늘에 이르러 정보통신부가 발족되면서 입법이 완료되었다.

정보통신시책에 관한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데서 우선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전산망법, 연구개발법 등 관련법률이 없는 것은 아니나 종합적인 차원에서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별법들이 오히려 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정보통신시책추진의 체제가 정비된 것을 의의로 생각한다. 정보통신부가 설치되었으나 타부처·기관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관계가 명쾌하지 못했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정보화촉진위원회, 실무위원회, 분과위원회 등의 조직체제가 정비되어 명실상부하게 정보통신부가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정비된 것이다.

세번째로 안정적인 재원확보방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비록 KT주식매각대금이 명시되지는 못했지만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문서로 소요금액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며 정보화예산의 중요성을 예산당국이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 무엇보다도 정보화촉진기금을 설치한 것은 재정건전화원칙에 입각한 기금통폐합 방침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을 인정함으로써 그 의의는 크다 할 것이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이 통합되는 대신 연구개발에 충당토록 연구개발 계정을 별도계정으로 분리하여 기금의 통합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분야의 연구개발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5. 향후 법운용방향

WTO의 출범에 따라 국경이 없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정보가 원활하게 활용되어 국가전체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반 정책수단을 강구하기 위하여 그동안 추진해오던 정보화촉진기본법안이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96. 1. 1부터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경제역확보에 필수적 관건인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미래의 핵심 산업인, H/W, S/W, 초고속망 등이 융합된 정보통신산업을 균형있게 육성하며, 정보화 및 정보통신산업육성정책을 조화있게 추진하여 시너지효과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법이 마련된 것이다.

이법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서는 관련업체, 학

계, 연구계 및 관련부처의 의견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운용하여야 하겠으나, 법이 국회를 통과한 현지점에서 시행령 제정과 추진체제 마련을 통하여 법운용을 준비해야 할 것이며, 법시행에 따라 정보화촉진기본계획 작성, 정보화추진위원회 등 기관구성·운영, 정보통신산업육성 대책수립, 초고속정보통신기반 구축, 정보화촉진기금의 설치·운용 등이 필요하다.

향후 법운용방안으로 첫째,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범국가적 정보화촉진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될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이 마련되면 관계중앙행정기관별로 그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정보화 추진위원회의 신의를 받아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 법상 신설·개편되어야 할 정보화관련기관을 신설정비 해야 한다. 우선 정보화추진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그 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전산원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정보화추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 활용하

기 위한 보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정보통신질서 확립과 정보의 안전 유통을 위해 정보보호센터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설립추진토록 하는 등 정보보호 추진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공공·지역·산업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정부는 정보의 제공 확대 및 역기능 방지대책도 마련하여야 한다.

넷째,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단지조성, 신기술지원, 유통구조 개선, 국제협력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섯째로 정보통신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을 초고속정보통신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존계획에 따라 추진토록하여야 하며 기획단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대통령령에 설치기반을 마련,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신설되는 정보화촉진기금의 재원마련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등 기금설치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화촉진기본법제정은 '80년대초 이후 10년 이상 정부의 현안이던 정보화촉진 및 정보산업육성방안의 법적제도화를 일단락짓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이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체 등 모든 유관기관이 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만 그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법의 제정은 어찌면 시작일 것이다.

이법의 제정을 계기로 정부, 산업계와 국민모두가 합심협력하고 노력하여야만 우리도 21세기초 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DC**

